

보도 일시	2023. 1. 4.(수) 12:00			
담당 부서	지방재정경제실 공기업관리과	책임자	과 장	장재원 (044-205-3981)
		담당자	사무관	전형구 (044-205-3991)

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을 기준(가이드라인) 발표

- 2023년 총인건비 인상을 1.7%로 확정 -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(지침)에 근거 ‘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(가이드라인)’을 확정·발표하였다.

* 「지방공기업법」 제66조의2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

○ 이번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2023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1.7% 인상하였다.

○ 다만,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화할 예정이다.

□ 우선,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*에 대해서는 2.2~2.7%(+ 0.5%p~1.0%p)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하였다.

* 기관 임금수준이 지방공기업 평균임금 이하인 경우

○ 특히, 올해에는 지방공기업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공무원(무기계약직)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무원 인상률을 0.5%p 추가 조정* 하였다.

*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해당하지 않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수준이 전체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평균의 85%(29백만원 수준)이하인 경우, 기관 전체 평균임금에 관계 없이 0.5%p 추가인상

○ 또한,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급식비·복지포인트·명절휴가비를 인상하는 등 공무원(무기계약직) 처우개선*에도 중점을 두었다.

* 월급식비 13→14만원, 연간 복지포인트 40→50만원, 연간 명절휴가비 80→100만원

- 지방출자·출연기관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또한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급식비·복지포인트·명절 휴가비를 인상한다.
-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, 복구 등 재난 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총인건비 한도 외로 인정할 예정이다.
-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“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, 지방재정여건과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확정했다”라며, “지속적으로 국가공공기관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며,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(가이드라인)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점검·확인할 계획이다”라고 밝혔다.

